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신설〉

■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99호)

202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석준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0. 2.
3. 회 부 일 : 2024. 10.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다수의 공중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공격하는 이상동기 범죄 사건 발생과 함께 온라인 등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살인예고 글 등이 다수 게시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형법」에 신설함으로써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형법」 제2편(각칙) 제5장(공안을 해하는 죄)에 i)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공중협박죄(안 제116조의2)를 신설하고 있음. 또한, ii)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흥기를 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장소흥기소지죄(안 제116조의3)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u><신설></u>	제116조의3(공공장소흥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흥기를 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공중협박죄 신설 관련

온라인을 통한 살인예고글 게시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는 행위는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만으로 사회 일반에 공포심을 주고 공공의 안녕을 저해함. 이에 대한 형사적 대응의 필요성이 적지 않으나, 현행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른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즉, ① 현행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¹⁾는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판례상 협박죄는 고지된 해악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경우에 성립되며,²⁾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³⁾ 따라서, 괴협박자가 특정되지 않은 협박행

1)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위를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② 또한, 「형법」 제255조의 살인예비죄는 범죄 실현 의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준비행위가 있을 것을 요함. 따라서, 흉기 구입 등 살인죄의 실현에 기여하는 행위가 없는 경우 해당 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움.⁴⁾ ③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무집행 저지 또는 곤란, 공무방해의 의사의 존재 등에 대한 입증이 요구됨.⁵⁾ ④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공포심 유발 문언, 영상 등의 유통죄⁶⁾는 그 정보가 특정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해야 적용될 수 있음.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예고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 한계가 존재하는 점, 해당 행위는 대중의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여 공공의 안전과 평온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다는 점 등에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됨.⁷⁾

3)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5)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6)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7) 다만,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로 침해되는 법익과 비교할 때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 기존 법률로도 해당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선

관련 해외입법례는 다음과 같음.⁸⁾ ① 미국의 경우 뉴욕주,⁹⁾ 버지니아주, 일리노이주, 텍사스주, 펜실베이니아주 등의 형법에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음.

② 독일 형법은 ‘개인의 자유에 관한 죄’ 항목(제18장)의 일반 협박죄(1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외에 ‘공공질서에 대한 죄’ 항목(제7장)에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죄’(3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를 규정하여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상당한 방법으로 소요·강간·살인·상해 등의 범죄행위를 범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음.¹⁰⁾

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국회입법조사처,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 규제 논의의 쟁점, NARS 현안분석 제306호, 2023.11). 참고로, 21대 국회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 또는 게시한 자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안번호 제23831호(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3.8.16. 발의), 제23835호(홍석준의원 대표발의, 2023.8.16. 발의), 제24004호(김용판의원 대표발의, 2023.8.24. 발의))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바 있음.

8) 각국 주재 국회입법관 조사자료 및 법무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9) 뉴욕주 형법 §490. 20.[테러협박]

1. 공중 일반을 겁먹게 하거나 협박할 의도, 협박이나 위협을 통해 정부기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의도, 또는 살인, 암살, 또는 납치를 통해 정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특정 범죄(살인, 방화, 납치 등)를 범하거나 범해지도록 할 것임을 위협함으로써 특정 범죄에 대한 합리적 기대나 임박한 실행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킨 사람은 테러협박죄에 처한다.
2. 이 조에 따른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해당 범죄를 실행할 의도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대상자에게 위협이 도달하지 않았다는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죄는 D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 D급 중범죄 : 징역 7년 ↓

10) 독일 형법

제7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

제126조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 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상당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위협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125조a 제2문 제1호 내지 제4호의 소요
2. 제177조(성적강요, 강간)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78조(성적강요, 강간치사)의 성적자기결정에 관한 범죄
3. 모살(제211조), 고살(제212조), 인종학살(국제형법 제6조), 반인도적 범죄(국제형법 제7조), 전쟁범죄(국제형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2조)
4. 위험한 상해죄(제224조), 중상해죄(제226조)
5. ~ 8. (생략)

②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자신의 확정적 인식과 달리 제1항에 규정된 위법행위의 실현이 임박한 것처럼 기망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18장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

③ 오스트리아 형법은 ‘자유에 관한 죄’ 항목(제3장)의 일반 협박죄(1년 이하 자유형) 외에 ‘공공의 평온에 관한 죄’ 항목(제20장)에 ‘대중협박죄’(3년 이하 자유형)를 규정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침해에 대한 협박으로 국민 또는 다수의 사람을 공포와 불안에 빠뜨리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¹¹⁾

④ 스위스 형법은 ‘자유에 관한 죄’ 항목(제4편)의 일반 협박죄(3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외에 ‘공공의 질서에 대한 죄’ 항목(제12편)에 ‘일반 대중에 대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 조성’(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여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협을 위협하거나 가장하여 대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¹²⁾

다만,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경우 공중협박 행위 자체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프랑스의 경우 테러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의 안녕을 심각하게 해치려는 목적

제241조(협박) ① 타인에 대하여 타인 또는 타인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중죄의 실행을 협박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1) 오스트리아 형법

제20장 공공의 평온에 관한 죄

제275조(대중협박) ① 생명, 건강, 신체의 불가침성,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침해를 고지한 협박으로 국민 또는 다수의 사람을 공포와 불안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3장 자유에 관한 죄

제107조(위험한 협박) ① 타인을 공포와 불안에 빠지게 할 목적으로 위험하게 협박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2) 스위스 형법

제12편 공공의 질서에 대한 죄

제258조(일반 대중에 대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 조성) 누구든지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협을 위협하거나 가장하여 대중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제4편 자유에 대한 죄

제180조(협박죄)

1. 누구든지 심각한 위협을 통하여 타인을 공포심 또는 불안감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으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함. 영국의 테러법(Terrorism Act 2000)¹³⁾ 또한 일반 대중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의 위협 또한 테러행위로 포함하고 있으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이념 목적 달성을 위할 것과 준비행위가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일본 형법은 불특정다수에 대한 살인·방화 등을 예고한 공중협박에 관한 별도 처벌규정은 없으며, 사안에 따라 형법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함.

정리하면, 공중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이 가진 처벌조항의 한계, 보호법익의 중요성과 범죄예방의 필요성, 외국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공백에 대한 해소방안을 우리 형사법 체계에 맞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3) 영국 테러법(Terrorism Act)

제1조 테러행위 정의

- (1) 동 법률에서 정의하는 “테러행위”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행위의 실행 또는 위협임:
 - (a) 아래 (2)항에서 정하는 행위.
 - (b) 정부 또는 국제적 정부기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일반 대중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의 실행 또는 위협, 그리고
 - (c)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이념 목적달성을 위한 행위의 실행 또는 위협
- (2) 동 항에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
 - (a) 타인에 대한 심각한 폭력행위
 - (b) 타인의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행위
 - (c) 행위자를 제외하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 (d) 일반 대중의 건강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 또는
 - (e) 전자통신 시스템을 심각하게 침해 또는 방해하려는 행위

제5조 테러행위 준비

- (1)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테러행위 준비에 가담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 (a) 테러행위를 자행하거나;
 - (b) 타인의 테러행위를 돕는 행위;
- (2) 위 (1)항은 행위자의 목적이나 준비행위가 어떤 특정한 테러행위 또는 일반적인 테러행위와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됨
- (3) 동 조항에 따라 유죄판결 받은 자는 종신형에 처함.

2)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신설 관련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배회할 경우 일반 또는 특정인에 공포감을 주고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형사적 대응의 필요성이 적지 않음. 그러나,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 「경범죄 처벌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등을 통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즉, ① 현행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¹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폭력행위처벌법」 상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적용대상 범죄가 제한적임.¹⁵⁾ ② 「경범죄 처벌법」 상 흉기은닉(제3조제1항제2호)은 법정형이 낮아(10만원 이하의 벌금 등)¹⁶⁾ 긴급체포의 대상¹⁷⁾이 되지 아니하고, 주거 등을 밝힌 경우

14)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공동상해죄, 상해누범, 특수상해누범, 단체등의구성·활동죄, 단체등의살인죄, 단체등의상습특수상해죄 등에 한정되고, 「형법」 상 특수상해, 중상해, 살인죄 등 포함되지 아니함.

16)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料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중략)

2.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뿔·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이하 생략)

에는 현행법 체포의 대상¹⁸⁾도 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③ 총포화약법에 따른 도검 등 불법소지(제12조 및 제71조제1호)도 적용 대상이 동법 제2조에 따라 제한되어 있고,¹⁹⁾ 허가받은 도검이더라도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소지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를 위해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중대한 범죄로

17) 「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18)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⑥ 이 법에서 “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략)

3.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제2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제2항(분사기·전자충격기만 해당한다)·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이하 생략)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현행법상 대응은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됨.

관련 해외입법례는 다음과 같음.²⁰⁾ ① 영국은 1988년 형사법(Criminal Justice Act 1988)에서 합리적인 사유(업무상 또는 종교적 필요 등 포함)나 법적 권한 없이 칼날이 있거나 끝이 뾰족한 물건²¹⁾을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자를 약식기소의 경우 6개월 이하, 정식기소의 경우 4년 이하의 징역(또는 벌금형 및 병과 가능)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²⁾

② 독일은 무기법(WaffG)에서 총기류, 도검 등 무기의 소지 및 사용을 규율하고 있음. 칼날의 길이가 12cm 이상인 도검의 휴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공행사에서의 무기 휴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

20) 각국 주재 국회입법관 조사자료 및 법무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21) 접는 포켓나이프는 자르는 부분이 3인치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됨.

22) 1988 형사법 (Criminal Justice Act 1988)

제139조 공공장소에서 칼날 또는 모서리나 끝이 날카로운 물체의 소지

(1) 아래 (4), (5)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동 조항에서 정하는 물체를 공공장소에서 소지한 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2) 이 조항은 접이식 주머니칼(포켓나이프)을 제외하고, 칼날이 있거나 끝이 뾰족한 모든 물체에 적용된다.

(3) 이 조항은 접이식 주머니칼의 자르는 부분이 3인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4) 공공장소에서 해당 물체를 소지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 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동 조항의 적용에서 면제될 수 있다.

(5) 위의 (4)항에서 정하는 바와 별개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물체를 소지한 경우 형사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다.

(a) 업무상 필요 (b) 종교적 필요 (c) 전통의복의 일부

(6) 위 (1)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a) 약식기소의 경우 최대 6월의 징역, 또는 법적 최대벌금을 넘지 않는 금액의 벌금, 또는 둘 다;

(b) 정식기소의 경우, 최대 4년의 징역, 벌금, 또는 둘 다;

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²³⁾

③ 프랑스는 방위법(Code de la défense)에서 무기를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고 국가안보법(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에서 방위법의 무기 등급 체계를 그대로 가져와 각 등급에 맞는 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국가안보법은 위험성의 정도가 낮아 누구나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단검 등 D 등급(catégorie D) 무기(홍

23) 무기법(Waffengesetz(WaffG))

제1조(법률의 대상 및 목적, 정의)

(2) 무기는 다음을 의미한다.

1. 총기류 또는 이에 준하는 물품 및
2. 휴대용 개체로

- a) 본질적으로 인간의 공격 또는 방어 능력을 감소시키도록 의도된 것으로 특히 절단 혹은 찌르는 무기
- b) 성질, 작동 방법 또는 작동 방식으로 인해 인간의 공격 또는 방어 능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더라도 이 법에 언급되어 있는 것.

제42조(공공행사에서 무기 휴대 금지)

(1) 공공 오락, 축제, 스포츠 행사, 무역 박람회, 전시회, 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공공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법 제1조제2항에 따른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제42조의a(모조 총기 및 특정 휴대용 개체의 휴대 금지)

(1) 다음의 물건은 휴대가 금지된다.

1. 모조 총기
2. 부칙1 제1장 제2절 1.1에 따른 절단 및 찌르는 무기
3. 한 손으로 고정할 수 있는 날이 있는 칼(one-hand knives) 또는 날 길이가 12cm 이상되는 픽스트 나이프(fixed knives).

(2)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진, 영화, 영상 촬영 또는 연극 공연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한 경우
(이하 생략)

제52조(벌칙)

(3)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한다.

9.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

(4)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3항의 과실범의 경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제3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제53조(벌금) (생략)

(1)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정위법행위에 해당한다.

21a. 모조 총기, 절단 혹은 찌르는 무기 혹은 제42조a에 명시된 도검을 휴대한 경우

(2) 행정 위법행위의 경우 1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motif légitime) 없이 집 밖에서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또는 1만 5천 유로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²⁴⁾

④ 일본은 「총포도검류 소지등 단속법」(銃砲刀劍類所持等取締法)에서 업무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칼을 휴대하는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경범죄법(輕犯罪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칼, 쇠파이프 및 그 밖의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구를 숨겨 휴대한 행위에 대하여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⁵⁾ 일본은 2008년 6월 아키하바라 무차별살상

24) 국가안보법(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

제317조의8

제315-1조와 제315-2조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집 밖에서 하나 또는 다수의 무기나 무기의 필수적인 부품, 또는 탄환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것이 적발된 경우에는, 비록 합법적으로 그것을 구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벌한다.

3. 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극히 낮은 예외적인 무기 등을 제외한 D 등급의 무기, 탄환 또는 부품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5천 유로의 벌금형

국가안보법 시행령 제311조의2

등 급	예 시	구입 방법
Catégorie D	공공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모든 의심스러운 도구 (예) 단검, 가정용 식칼-과도, 곤봉, 100ml 이하의 최루액 분사기, 총포가 아닌 위장 무기(가령, 끝이 뾰족한 장우산), 공기총(발사 에너지 20J 이하의 것) 등	자유로운 구입.소지 가능(단, 집 안에서)

25) 총포·도검류 소지등 단속법(銃砲刀劍類所持等取締法)

제22조 누구라도 업무 기타 정당한 이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각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 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를 넘는 칼을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 칼날의 길이가 8센티미터 이하의 가위 또는 접이식 칼 또는 이들 칼 이외의 칼로 정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형상의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사건²⁶⁾ 이후 같은 해 총포도검법을 개정하여 소지금지 대상이 되는 도검의 범위를 확대(칼날의 길이 15cm 이상 → 5.5cm 이상)하였음. 또한, 해당 사건 전후로 경범죄법 상 금지되는 흉기소지 행위에 대한 단속을 엄격하게 실시함으로써 검거실적이 매우 높게 나타남.²⁷⁾

정리하면, 공중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폭력행위처벌법, 「경범죄 처벌법」, 총포화약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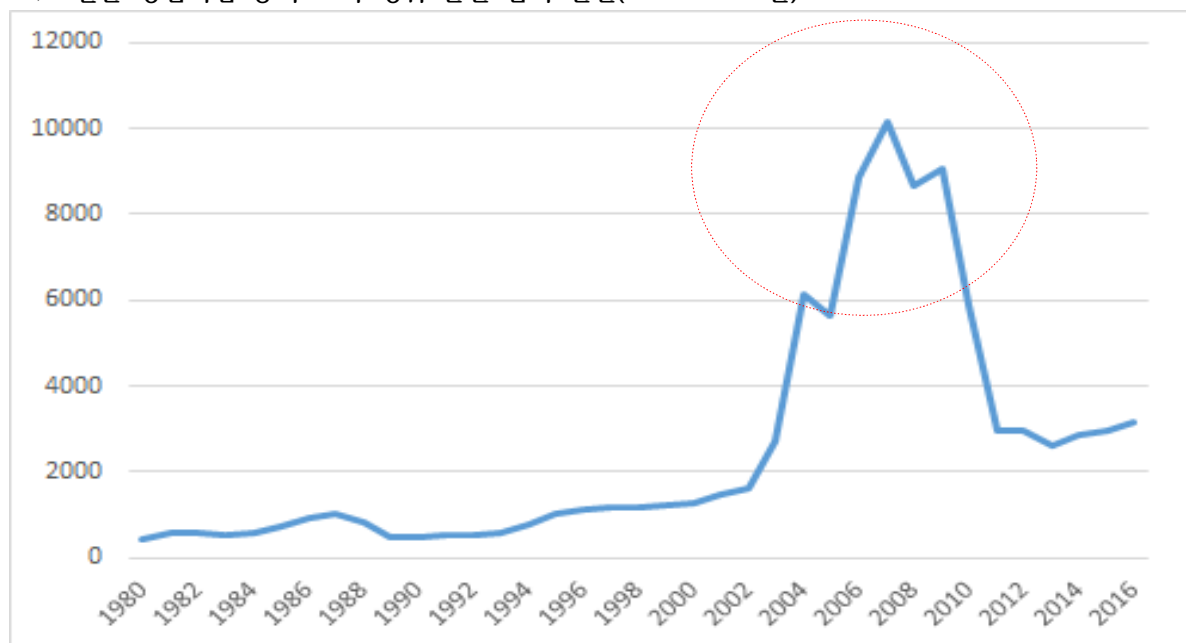
경범죄법(輕犯罪法)

제1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칼, 철봉 및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구를 숨겨 휴대하고 있던 자

26) 2008년 6월 8일, 도쿄 치요다구 소재 JR 아키하바라역 앞의 ‘차 없는 거리’에 어떤 남성이 트럭으로 돌진한 후 소지하고 있던 단검(Dagger Knife)으로 7명을 살해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사건

27) <일본 경범죄법 흉기 소지 행위 관련 검거 인원(1980~2016년)>



자료: 井阪博、「実務のための軽犯罪法解説」、239-241頁 재구성

등이 가진 처벌조항의 한계, 보호법익의 중요성과 범죄예방의 필요성, 외국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공백에 대한 해소방안을 우리 형사법 체계에 맞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056